

의안번호	2212092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D433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2억 5,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11억 800만원(연평균 6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2	0	0	66	0	128	26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20	120	120	120	120	600	120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120	120	120	120	120	600	120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안 제12조)	2,379	2,379	2,379	2,379	2,379	11,895	2,379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3,577	3,577	3,577	3,577	3,577	17,885	3,577
합 계	6,258	6,196	6,196	6,262	6,196	31,108	6,222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 동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 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 (시민사회위원 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 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 (시·도 시민사회 위원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시· 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6	안 제12조 (한국시민사회재 단의 설립)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 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 (시·도 및 자치 구 시민사회지원 센터의 설치 등)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 역시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미대상: 국무총리가 안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안 제7조 (시·도 시민사회 활 성화와 공익활동 증 진을 위한 계획의 수 립 등)	-	미대상: 국무총리가 안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안 제9조 (시민사회위원회)	○	-
5	안 제10조 (시·도 시민사회위원 회)	○	-
6	안 제12조 (한국시민사회재단 의 설립)	○	-
7	안 제13조 (시·도 및 자치구 시 민사회지원센터의 설 치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9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 운영비용은 2020~2022년 운영되었던 시민사회발전위원회¹⁾ 운영비용을 준용함
- 안 제12조에 따른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운영비용은 유사사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²⁾에 대한 보조금을 준용함
- 안 제13조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군·구에 설치되는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도에만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추계 대상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³⁾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2백만원, 2030년 66백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57백만원)⁴⁾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⁵⁾함

-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2020.5. 제정, 2022.10. 폐지)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2020~2022년까지 운영한 바 있음
- 2)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진흥정책의 집행과 관련 부처, 민간자원봉사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증진, 전국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국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교육, 자료집 발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2010년 6월에 설립하였음
-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7월 기준,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2.0

- 4) 국무조정실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prism.go.kr)
- 2020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68백만원), 2023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45백만원)
- 5)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2	0	0	66	0	1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2022년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제정안의 시민사회위원회 규모와 유사⁶⁾하므로 당시 평균운영비용 120백만원이 추계기간동안 연도별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운영비용: 2020년 142백만원, 2021년 133백만원, 2022년 84백만원

[표 3]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민사회위원회설치·운영 (안 제9조)	120	120	120	120	120	6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위원회 규모 비교

구분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20~2022)	시민사회위원회(제정안)
위원 수	35명 이내	40명 이내
민간위원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	미규정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1명은 국무총리,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

다.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11개 시·도에서 제정안 제10조의 시민사회위원회와 유사한 거버넌스를 설치·운영 중임

[표 4] 시·도별 시민사회 거버넌스 현황

연번	지역	조 례	위원회명
1	서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2	부산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부산시민협치협의회
3	대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4	인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인천민관동행위원회
5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위원회
6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공익활동증진위원회
7	경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8	충북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9	충남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충남민관협치회의
10	경남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
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17개 시·도 중 이미 설치되어 있는 11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시·도에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수는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와 동일하게 3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20명으로 가정

- 위원회는 분기별(연간 4회)로 개최한다고 가정하고,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따라서, 각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마다 연 2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 시·도에 시민사회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연간 120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설치 시·도(a, 개)	6	6	6	6	6	-
시·도당 소요비용(b, 백만원)	20	20	20	20	20	-
소요비용(a×b, 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6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안 제12조)

- 제정안은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준용하면 2027년 2,379백만원 등 2027~2031년까지 118억 9,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2025년 기준 2,37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임

[표 6] 한국시민사회재단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한국시민사회재단	2,379	2,379	2,379	2,379	2,379	11,8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10개 시·도에서 제정안 제13조의 시민사회지원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중임

[표 7] 시·도별 지원조직 예산 현황

연번	지역	조 례	지원조직	지원조직 예산 (백만원)
1	서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1,670
2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지원센터	727
3	대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400
4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600
5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390
6	경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45
7	충북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369
8	충남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733
9	경남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5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356

주: 경상남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보조금 집행액이 경미함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는 17개 시·도 중 이미 설치되어 있는 10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도에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정함

- 타 시·도와 인구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 서울,경기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센터 지원 예산이 없는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도의 시민사회지원센터 지원 예산의 평균액은 511백만원임
- 신규로 센터가 설치되는 7개 시·도에 연간 511백만원의 센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

□ 따라서, 시민사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시·도에 시민사회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연간 35억 7,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설치 시·도(a, 개)	7	7	7	7	7	—
시·도당 소요비용(b, 백만원)	511	511	511	511	511	—
소요비용(a×b, 백만원)	3,577	3,577	3,577	3,577	3,577	17,8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2억 5,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11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2	0	0	66	0	128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20	120	120	120	120	600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120	120	120	120	120	600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안 제12조)	2,379	2,379	2,379	2,379	2,379	11,895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3,577	3,577	3,577	3,577	3,577	17,885
합 계	6,258	6,196	6,196	6,262	6,196	31,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
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